

2019년도 제25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

I. 회의 개요

- 일 시 : 2019. 11. 18.(월요일), 10:30
- 장 소 : 한국저작권보호원 회의실
- 참 석 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제1분과위원회 위원 3명 참석
 - 심의위원 : 백대용(분과위원장), 최승수, 최현용 위원
- 회의 진행순서 및 안건

1.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분과위원장

2. 전자(제2019-24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분과위원

3. 안건상정 분과위원장

〈의결안건〉 ※ 안건 검토 보고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성원영 전문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4. 폐회선언 분과위원장

II. 회의내용 및 결과

1. 의결안건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주요내용: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물등에 대한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 5,709건(안전번호 제2019-147198호~149138호)
 - 회의결과: 안전번호 제2019-147198호~147235호 웹하드 사이트에서 만화 불법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19-147236호~147238호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링크를 설정한 게시물에 대한 사안은 심의대상 게시물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가결함.
안전번호 제2019-149138호는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안전이므로 시정 조치의 권고를 부결함.
- 그 외에 불법복제물등에 해당되는 심의안건 게시물 5,649건은 삭제 또는 전송중단의 시정을 권고하고 복제·전송자에 대하여는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Ⅲ. 회의 의사록

1. 개회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 제257회 저작권보호 심의분과위원회 개회를 선언함.

2. 전차(제2019-249회)회의록 확인 및 공개여부 결정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차 회의록 공개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함.
- A 위원 : 회의록 원안과 회의록 공개에 대해 동의함.
- B 위원 : 이견이 없으며, 회의록을 공개하는 것에 찬성함.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전차 회의록에 대한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고, 회의록을 공개하기로 결정함.

3. 안전상정

- 제1호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의한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
- 성원영 전문위원 : 금일 심의대상은 안전번호 제2019-147198호~149138호로 심의대상 게시물은 모두 5,709건임.

관련 법령과 심의 기준은 검토보고서 보고로 같음하겠음.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47198호~147235호는 실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으로, 웹하드 사이트 이용자가 다수의 만화복제물을 판매한 사안임.

(안전번호 제2019-147198호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는 “저는 게임/만화/영화를 업로드합니다”, “혹시 원하시는 자료가 있으면 쪽지를 주세요”라고 기재되어 있음. 게시자는 자신이 웹하드에서 판매하는 불법복제물을 적극 홍보하고 있음.

(게시자가 홍보하는 불법복제물 목록을 제시하면서)본 건 복제·전송자가 웹하드에 업로드 한 게시물 목록을 보면, 다수의 불법복제물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47198호~147235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B 위원 : 게시자가 영리 목적으로 불법복제물을 복제·전송하고 있는 점, 해당 만화는 시중에서 판매 중인 저작물로 심의대상 게시물이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심의대상 게시물에 대한 시정권고를 하는 것이 타당함.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47198호~147235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7236호~147238호는 네이버 이용자가 자신의 블로그에 불법복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가 설정된 게시물을 올린 사안임.
(민원인이 제출한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7236호는 익명의 민원인이 신고한 건임. 심의위원회는 2019. 5. 해당 블로그의 다른 게시물에 대해 시정권고를 가결한 바 있음.
(해당 블로그 소개글을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의 블로그명, 좌측 상단의 블로그 소개를 보면, 해당 블로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된 것으로 보임. 좌측 하단의 카테고리를 보면,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목록을 제시하고 있음.
(링크로 연결된 구글 드라이브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에 설정된 링크를 클릭하면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인 '구글 드라이브(Google Drive)'에 저장된 최신 영화로 연결됨. 총 54개 영상저작물이 mp4 파일로 제공되고 있으며 화질도 상당히 좋음.
- C 위원 : 안건번호 제2019-147236호의 블로그 계정 소유자와 구글 드라이브 계정 소유자가 동일인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심의대상 게시물, 펜션 홈페이지, 클라우드 내 증거 화면을 제시하면서)업로더가 아닌 제3자가 클라우드에 저장된 파일의 위치 정보를 알기 어렵고, 해당 블로그명에 드러난 펜션명 및 연락처, 펜션 홈페이지의 대표자 성명 및 연락처, 클라우드 파일 소유자 정보를 비교해 보면 모두 일치함. 그렇다면 심의대상 게시물의 링크를 설정한 자와 클라우드 서비스에 불법복제물을 업로드한 자가 동일인일 가능성이 매우 큼.
(보호원이 제출한 조사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7237호~147238호는 보호원이 정보통신망을 조사하여 심의를 요청한 건임.

(해당 블로그를 제시하면서)심의대상 게시물은 일본 애니메이션의 전체 23분 50초 중 15분 분량만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영상물에 우리말 자막은 없음. 다른 게시물로 연결되는 직접링크도 함께 제공하고 있음. 링크로 연결되는 게시물에서는 동일한 저작물의 전체 분량을 스트리밍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우리말 자막도 있음. 심의대상 게시물의 작성자와 링크로 연결되는 게시물의 작성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은 2017. 3. 링크행위에 대한 민사 방조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한 바 있음.

저작권법 제133조의3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을 '저작권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정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권리 '침해'라 함은 민·형사적인 침해를 모두 포괄하는 의미라고 할 것임. 따라서 링크설정행위가 민사적인 의미에서 공중송신권 침해의 방조에 해당되어 그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그 링크설정 게시물은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할 수 있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47236호~14723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C 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대상이 되는 불법복제물등에 해당하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B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47236호~147238호의 각 심의대상 게시물은 해당 저작물의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가결 의견임.
- A 위원 :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47236호~147238호는 게시물에 대해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을 권고하는 것으로 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안전번호 제2019-149138호는 안전번호 제2019-149137호와 중복하여 심의 요청된 사안임.
- A 위원 : 중복으로 심의가 요청된 이유는 무엇인지?
- 성원영 전문위원 : 보호원의 시스템 오류임.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49138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안전번호 제2019-149138호는 안전번호 제2019-149137호와 동일한 사안임. 중복으로 심의 요청된 안전번호 제2019-149138호는 부결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특별한 이견이 없음.
- C 위원 :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49138호는 시정조치의 권고를 부결함.
- 성원영 전문위원 : (불법복제물 제공화면, 파일 다운로드 화면, 불법복제물 재생화면을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47239호~149137호

는 웹하드 등 사이트를 통해서 단순 불법복제물이 공중의 이용에 제공된 사안임.

(게임 '옥토파스 트래블러'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 2019-147288호는 닌텐도에서 2018. 7. 13., 스팀에서 2019. 6. 8. 각 출시한 최신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정품은 약 64,800원에 판매 중임. 해당 저작물은 플랫폼(스팀)에 접속하지 않으면 게임이 구동되지 않는데, 심의대상 게시물의 파일은 크래킹을 한 파일임. 해당 게임물은 최근 불법복제물로 다수 발견되고 있음.

(게임 '코드 베인'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7303호는 2019. 9. 26. 출시된 최신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으로, 정품은 약 64,800원에 판매 중임. 배급사는 반다이 남코 엔터테인먼트임. 해당 게임물은 청소년 이용 불가임.

(게임 'Dusk Diver'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7309호는 2019. 3. 26. 출시된 최신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정품은 약 38,000원에 판매 중이고 배급사는 게임피아임. 해당 안건의 게임물도 최근 불법복제물로 빈번히 발견되고 있음.

(게임 '아우터 월드'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7322호는 2019. 10. 25. 출시된 최신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정품은 약 63,000원에 판매 중이고 배급사는 프라이빗 디비전임. 해당 게임물은 청소년 이용 불가임.

(게임 '인디비저블'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7331호는 2019. 10. 9. 출시된 최신 게임물을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정품은 약 45,000원에 판매 중이고 배급사는 505 게임즈임.

(만화 '로또 400억에 당첨되었지만 이세계로 이주한다 (출판 : 소미미디어)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번호 제2019-147684호는 웹하드에서 어문저작물을 판매한 사안으로, 정품은 1권 당 약 6,300원에 판매 중임. 해당 어문저작물은 아직 완결되지 아니함.

(영화 '장사리 : 잊혀진 영웅들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건

번호 제2019-147992호는 2019. 9. 25.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19. 10. 21. VOD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해당 안전의 영화는 최근 불법복제물로 자주 발견되고 있음. (영화 '두번할까요 (2019)' 관련 자료를 제시하면서)안전번호 제2019-148011호는 2019. 10. 17. 개봉한 우리나라 영화를 웹하드에서 판매한 사안임. 해당 영화는 2019. 11. 4. 극장동시 VOD 서비스를 개시하였음.

- 백대용 분과위원장 : 전문위원의 안전 설명을 바탕으로 위원들에게 안전번호 제2019-147239호~149137호에 대한 의견을 구함.
- A 위원 : 데드카피 불법 전송 사안이므로 이견 없이 동의하며, 심의 일 현재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사안에 대해서는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조치만을 하는 것이 타당함.
- B 위원 : 모두 불법 복제된 음악, 만화, 출판, 영상물, 프로그램, 게임물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공중의 이용에 제공한 사안으로 합법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 의견임.
- C 위원 : 저작권법 제133조의3에 따른 시정권고의 필요성이 인정됨. 다만, 그 중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되어 있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이 타당함.
- 백대용 분과위원장 :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47239호~149137호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경고의 시정조치 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경고, 삭제 또는 전송중단 시정권고 심의는 아래와 같이 의결함)

“만장일치로 안전번호 제2019-149138호는 부결하고, 안전번호 제2019-147198호~149137호는 불법복제물등의 삭제 또는 전송중단과 그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의 시정권고를 하되, 이미 삭제 또는 전송 중단된 게시물에 대해서는 경고의 시정권고만 하는 것으로 의결함.”

3. 폐회 선언

- 백대용 분과위원장이 제25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폐회를 선언함.

2019년 제257회 저작권보호심의분과위원회 회의록이
상기와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2019. 11. 25.

분과위원장 백대용

위원 최승수

위원 최현용